

차 · 별 · 없 · 는 · 사 · 회 · 를 · 열 · 어 · 갑 · 니 · 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행 가이드라인



• 이 책의 우측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용 이차원 바코드가 실려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 이행 가이드라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	04
2장 차별의 이해 .....	14
3장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	21
4장 정당한 편의 제공 체크리스트 .....	25
· 고용 .....	26
· 교육 .....	31
·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	39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	47
·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	60
· 사법 · 행정절차 .....	64
· 참정권 .....	67
· 직장보육서비스 .....	69

# 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 1. 배경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의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 배제, 격리와 같은 암묵적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 2. 의의

### 1.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며,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이다.

###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우리 정부가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 3. 법의 체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 제1장 총칙 / 제2장 차별금지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제6장 벌칙 / 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차별의 종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 직접차별 / 간접차별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 광고에 의한 차별 / 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적극적 우대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하여 장애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차별의 판단 기준과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5. 차별의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영역을 / 고용 / 교육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 · 부성권 · 성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및 건강권 /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PART-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 차별의 영역-① 고용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 금지, 의학적 검사의 금지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 차별의 영역- ② 교육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 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준수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등,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차별의 영역-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금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신청시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 금지 및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 예방 조치, 인신구금 · 구속 상태에서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 제공 의무,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술보조인이 있어  
의사전달이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 차별의 영역-⑥ 모 · 부성권, 성 등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 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지원책 마련, 성적자기결정권,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 금지,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및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한 홍보 ·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잘 할게요

당사자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차별의 영역-㉔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를 제한 · 박탈 · 구속 · 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 · 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6.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여길 경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2장 차별의 이해

### 1. 차별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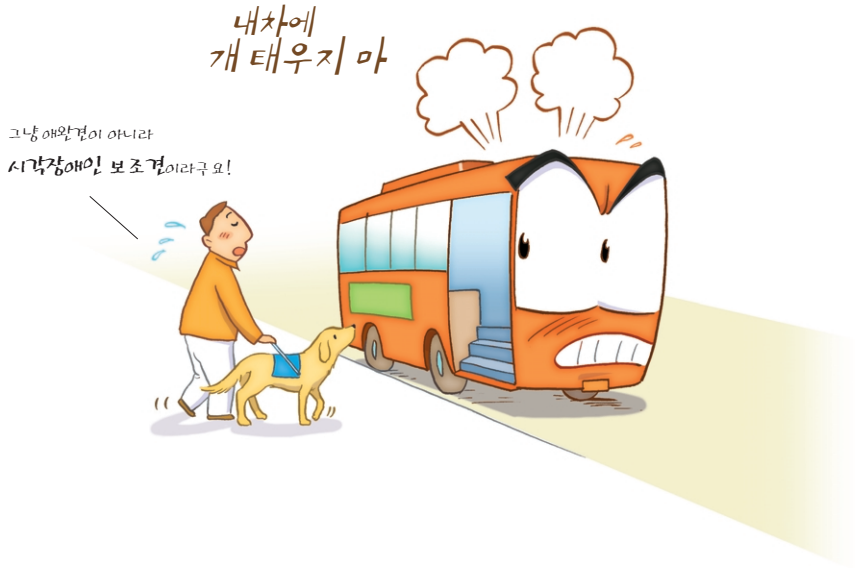
#### 1.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혹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 2.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직접·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과 동반한 수화통역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들어오게 하더라도 수화통역사를 장애인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지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나 수화통역사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수화통역사를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하는 것 등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방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도와주는 정당한 편의로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

## 차별의 유형-① 직접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직접차별은 직접적으로 차별을 의도하는 가시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차별은 일정한 법규범이 제정되거나 일정한 관행 또는 조치가 최초로 시행될 당시부터 차별목적이 의도되고 명시적으로 표현된 차별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위의 효과가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목적은 의제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직접차별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차별의 유형-㉔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직접차별은 의도적인 차별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달리하여 성립되는 차별이라면, 간접차별은 기준 자체는 동일하나 그 결과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별의 의도나 목적은 판단하지 않는다.

즉, 그 기준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 사회통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되며, 이러한 간접차별은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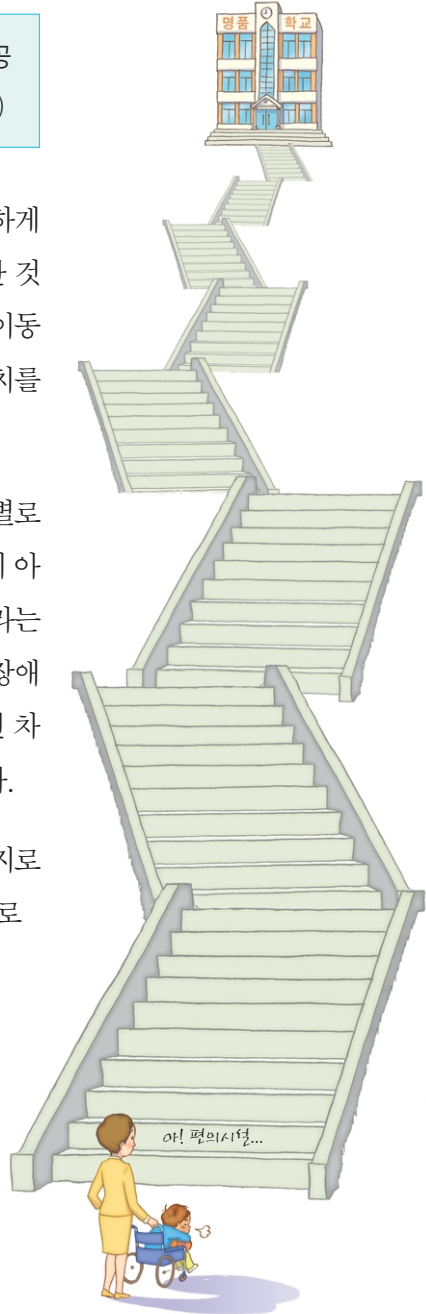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 및 접근·이동 등을 위한 시설, 서비스 등의 물적·인적 제반조치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차별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간접차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평등'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위한 조치로 간접차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있다.





## 차별의 유형- ④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광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게시성이 있는 알림행위를 통해 장애인의 이미지를 비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직접차별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것이다.

이번 화재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추측됩니다



열집 사람이  
정신적 장애인이라...  
무더위~



무더위 할 거 없어~  
정신적 장애인과 정신이상자는  
다르니까

### 3. 차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마다 개별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차별의 예외는 첫째, 해당 의무자의 성격, 재정 능력 등과 해당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특성. 둘째,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 셋째,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비용절감이나 해당의무자의 단순한 불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의 기본권 침해 및 피해가 클수록 정당한 사유로서의 차별의 예외가 적용될 여지는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 3장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 1. 정당한 편의 제공의 기본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혜적인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해당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할 수 없는 현실에 기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유형·정도·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어야 한다.
- ◆ 정당한 편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 2. 정당한 편의 제공의 예외

### 1.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 성별 ·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2. 편의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되는 경우란 사용자 등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편의의 제공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 여부는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와 비교하여 결정된다.



### 3. 대상시설 등의 구조 변경 또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대상 시설이 노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기존의 대상시설을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 4. 사용주와 시설주가 다를 경우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용주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주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가 없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하면, 시설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 5.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한 경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경우, 여기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제공하여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 6.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편의가 제공되더라도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4장 정당한 편의 제공 /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내용을 구체화 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차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 질 수 있으므로 체크리스트의 표기 여부가 직접적으로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고용

## 1. 개념

고용에서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지원과정에서의 동등한 기회보장과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를 말하며,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영 제6조).

시 기	사업장 범위
2009년 4월 11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1년 4월 11일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5조).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영 제5조 제1항 제1호)
-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영 제5조 제1항 제2호)
-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영 제5조 제1항 제3호)

-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영 제5조 제1항 제4호)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영 제5조 제1항 제5호)
-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영 제5조 제1항 제6호)

#### 4. 체크시 유의사항

- ❖ 고용영역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점검합니다. 다만,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 사용자의 편의제공은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고용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에 적합한 편의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체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 영 제5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사항은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할 단계적 범위(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사업장의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아니고 단순 임차인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비를 소유·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설물의 정비를 소유자·관리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1) 모집 · 채용 과정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모집자료, 채용광고 등은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서와 기타 양식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집 장소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 2) 채용 이후

#### 가. 사업장의 접근성

사업장의 주출입구와 이동통로에는 높이차이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통과하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건물내에서 회의실, 훈련실, 식당, 휴게실 등의 공간에 접근하거나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턱낫추기,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의 필요한 수단이 제공됩니다.			
화장실은 장애인근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나. 사업장내에서의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사용자는 장애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보장된 인터넷 등)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작업지침서 및 작업 지시서가 제공됩니다.			
정보접근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 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낭독자 및 수화통역자를 제공합니다.			
장애의 유형을 고려하여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이나 기계,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합니다.			

### 다. 교육·훈련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교재(점자자료 등)가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낭독자 및 수화통역사와 같은 보조인력이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화면확대프로그램등 교육에 필요한 보조수단을 제공합니다.			
교육·훈련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도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 시험 · 평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하여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조 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 등)이나 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시험 및 평가시간을 연장합니다.			
시험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의 변경)을 운용하여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마. 직무나 정책의 조정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하여 작업일정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침을 적절히 조정 · 변경합니다.			

# 교육

## 1. 개념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대학의 장이 정한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호) ▲장애인(법 제2조 제2항)이 교육기관(제3조 제6호, 시행령 제4조)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말하며,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법 제3조 제7호)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09년 4월 11일	2011년 4월 11일	2013년 4월 11일
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영유아 100인 이상 국공립·법인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유치원	특수반 설치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학교	국·공·사립 특수학교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각급학교	국·공·사립 각급학교	
고등교육기관	국·공·사립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그 외 1000㎡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원격대학은 2500㎡ 이상)		

구분	2009년 4월 11일	2011년 4월 11일	2013년 4월 11일
평가인정교육훈련시설			1000㎡이상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1000㎡이상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영재학교·영재교육원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연수기관			교원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 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 용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관련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법 제14조 제1항 제1호)</li> <li>·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시행령 제8조 제2호)</li> <li>·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시행령 제8조 제3호)</li> </ul>
교육서비스 참여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학습보조기기의 대여 및 보조견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의 확보 (법 제14조 제1항 제3호)</li> <li>·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li> <li>·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법 제14조 제1항 제4호)</li> <li>·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시행령 제8조 제1호)</li> <li>·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법 제14조 제1항 제5호)</li> </ul>

#### 4. 체크시 유의사항

- ❑ 교육영역에 있어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 의무는 재학중(입학 예정 포함, 이하 같음)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이므로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점검합니다.
- ❑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편의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체장애인 학생이 재학중인 교육기관에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적합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 영 제8조 제3호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에 의한 정당한 편의는 교육책임자가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할 단계적 범위(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는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교육책임자(학교의 장)가 해당 교육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상급 교육책임자(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교육시설물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급 교육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책임자가 단순히 교육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정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다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1) 유·초·중등교육기관 (보육시설 포함)

#### 가. 이동 및 접근 편의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학생의 통학을 위한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통학차량 운영 등)			
교문 밖에서 학교 현관에 이르는 진입로는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점자블럭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계단 외에 각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무실, 행정실, 특별교실(음악실, 과학실 등), 도서실 등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시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출입구의 폭이 충분히 넓고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하여 계단, 복도 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학교에서도 이동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휠체어 등 이동용 기자재를 대여해 줍니다.			

## 나. 보조인력 배치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필요한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합니다.			

## 다. 학습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상기자재 제공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표준텍스트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학생들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 컴퓨터 대체 입력장치(볼 마우스, 한 손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 등을 제공합니다.			

## 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

장애학생에게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조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 등)이나 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시험 및 평가시간을 연장합니다.			
시험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의 변경)을 운용하여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마. 장애학생 지원부서(담당자)

	예	아니오	해당없음
교내에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부서는 아니지만, 학생복지 관련부서 내에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 2) 고등교육 및 그 밖의 교육기관

### 가. 모집 · 입학에서의 편의제공

모집요강에 대한 정보, 상담 등은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나. 원활한 교수 ·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수강신청 등 학사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장애학생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등 각종 서식은 장애학생 스스로 인지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학교에 요청하면 교육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는 점자자료, 큰문자자료, 표준 텍스트자료로도 제공됩니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문자통역(속기), 수화통역, 보청기기 등이 제공됩니다.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요청하면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조절용 책상과 같은 학습보상기자재(교육용보조공학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각종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조정해 줍니다.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적절한 보조수단(확대시험지, 특수키보드 등) 이나 보조인력을 제공합니다.			
장애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시험 및 평가시간을 연장합니다.			
시험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시험방식의 변경)을 운용하여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 교육시설내 이동 및 접근 편의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교내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교내에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내의 이동로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동로에는 손잡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주출입구 및 건물내의 각 출입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높이차가 제거되어 있고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계단 외에 각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을 위하여 건물 내의 계단 및 복도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육시설내 이동 및 접근 편의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강의실, 학과사무실, 교수연구실, 화장실 등 학과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가, 열람실, 복사실, 자료대여실, 휴게실, 화장실 등 도서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실, 학생회실, 서점, 편의점, 식당, 쉼터, 화장실 등 학생회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객석, 단상, 플로어 등 체육관 내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담당자)

교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부서는 아니지만, 학생처 등 관련부서 내에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

## 1. 개념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편의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대상기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인 공원·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공동주택·통신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입니다(영 제11조).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영 제12조).

#### 4. 체크시 유의사항

❑ 시설물의 이용·접근에 관한 정당한 편의는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용영역에서의 사업장 접근성, 교육영역에서의 교육 시설물 접근성, 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공시설물 접근성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앞서 각 영역별 점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각 영역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이 2009. 4. 11. 이전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체크리스트

##### 1) 공원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이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과 형태가 고려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의 보도 중 하나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너비, 기울기, 바닥의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문이 충분히 넓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는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하도록 넓습니다.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용 장애인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너비와 깊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 하기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휠체어 사용자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으며 기울기가 심하지 않고, 바닥이 평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너비와 길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없습니다.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턱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중 하나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고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복도는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이상의 건물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가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로는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만큼 내부가 넓으며, 휠체어 사용자용 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을 통해 현재 위치와 이동상태를 알려줍니다.			
계단의 손잡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넓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칸은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			
대변기 한쪽에는 수직손잡이와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수평손잡이가 회전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대변기 옆쪽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에는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설비와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인용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에는 휠체어의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 가운데 1개 이상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샤워실은 샤워기가 높이조절이 되고,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샤워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과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 황색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장애인용 승강기 버튼 앞, 화장실 입구 등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를 통해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은 비상벨 주변에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객실 출입문옆 벽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객실내 화장실과 욕실은 이 가이드라인의 장애인용 화장실과 욕실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객실, 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과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1%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은 전동휠체어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너비와 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열람석의 상단은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높지 않으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있으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매표소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높지 않으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 3) 공동주택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휠체어 사용자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으며 기울기가 심하지 않고, 바닥이 평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2%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너비와 길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턱이나 계단)가 없습니다.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턱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와 출입구(문)중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고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예	아니오	해당없음
경사로는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는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만큼 내부가 넓으며, 휠체어 사용자용 버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음성안내와 점멸등을 통해 현재 위치와 이동상태를 알려줍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버튼에는 점자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안의 관리사무소, 경로당,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목욕장, 슈퍼마켓,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로의 기울기를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며, 주출입구의 높이차이가 되어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4) 통신시설

공중전화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통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체통의 투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 및 교통수단 등

## 1. 개념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편의로서 법 제1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로서 노선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 여객항만시설 등이며, 대상기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주와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교통행정기관입니다.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규정되어 있습니다(영 제12조).

#### 4. 체크시 유의사항

-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는 단계적 적용범위가 없으므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 이나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1) 교통수단

###### 가. 버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착 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등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상형 시내버스는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 버스는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를 가급적 낮추고 있습니다.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버스는 하나 이상의 승강구를 휠체어 사용자의 주출입구로 정하고 승강구의 너비를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휠체어가 탑승할 공간만큼 확보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차 신호를 알리는 스위치가 휠체어 사용자 탑승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나. 철도차량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승강설비가 휠체어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에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은 철도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에는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탑승하는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에 이르는 통로와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및 공간에서 장애인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객차에 1곳 이상의 승강구의 폭은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차량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착 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등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차량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 라. 항공기

항공기에는 당해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에 장애인이 사전요청을 할 경우 항공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합니다.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1개 이상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의 통로는 비치된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마. 선박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의 항구명 및 선박의 운항정보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전자 문자안내판이 출입구 부분 또는 중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톤 이상의 여객선은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사용자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여객정원 100인당 1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에는 휠체어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문은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탑승하는 승강구에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 및 공간에 이르는 통로와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및 공간에서 장애인용화장실에 이르는 통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화장실에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화장실 문은 미닫이식으로 하였습니다.			
출입구, 객석,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 2)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선버스 정류장, 철도 및 지하철 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휠체어사용자를 포함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미끄럽지 않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접근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출입구, 출입문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등 교통약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고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계단이 없습니다.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휠체어사용자등 교통약자가 쉽게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객시설 안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는 눈높이 위치에 방의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주출입구 앞에는 점형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2%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출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사용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너비와 길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통로는 전동휠체어 등과 사람이 교행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로의 바닥면에는 턱이나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 승강기, 화장실의 앞에는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하였습니다.			
통로에는 벽면을 따라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손잡이는 휠체어사용자나 어린이가 편리하게 잡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였습니다.			
손잡이의 양끝에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통로에는 시각장애인이 부딪칠 수 있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통로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였습니다.			
경사로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두 사람이 교행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게 설치되었습니다.			
경사로가 길 경우 중간 중간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을 만큼의 수평으로 된 휴식공간을 두었습니다.			
경사로는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되어 있고, 여객시설의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지상에서 대합실까지는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1개도 가능합니다).			

## 여객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승강장(플랫폼)이 양방향식(상행선과 하행선 승강장이 별도로 있는 방식)인 경우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승강기를 승강장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고, 승강장이 중앙식(상행선과 하행선 승강장이 공동인 방식)인 경우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승강기를 승강장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기는 15인승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팎의 모든 스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용 스위치는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태로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단, 승강기 내부에서 전동휠체어사용자등이 회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좌측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승강기 조작반, 통화장치등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내부에는 수평손잡이가 연속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내부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승강기 안에서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크기이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층의 승강장과 승강기의 내부에는 에스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개 층에 걸쳐 연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디딤판과 디딤판을 연결하는 수직벽(첼면)은 막혀 있습니다.			
계단은 가파르지 않으며 미끄럽지 않습니다.			
계단에는 손잡이가 연속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은 바닥에 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으며,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 입구에는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를 설치하였고, 출입구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자동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는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 양쪽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은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은 미단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여단이문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열립니다(단, 휠체어사용자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으면, 안쪽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대변기 양옆에는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 여객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인용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세면대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 하부에는 무릎이나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면대 양쪽에는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객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단, 장애인종합안내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소까지만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표준형 황색 점형블록과 4개의 돌출선을 가진 표준형 황색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시작부분과 끝부분, 장애인용 승강기 버튼 앞, 화장실 입구, 승강장 등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안내도가 있는 곳에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 주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앞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 앞에는 점형블록 또는 질감이 다른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표소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또는 발매기의 동전투입구, 버튼, 상품출구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버튼에는 품목, 금액 및 행선지가 점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찰구 가운데 1개 이상은 자동개폐식입니다.			
개찰구는 휠체어사용자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등의 승강장 끝부분에는 점형블록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가장자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차이에 의해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하나 이상 갖추고 있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사용자용 공간이 있는 차량이 서는 위치의 승강장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보안검사장에서 금속탐지기 검사를 할 경우 휠체어사용자등의 통행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입, 출입, 회전이 가능하며,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여객시설

예	아니오	해당없음
---	-----	------

버스정류장의 대기시설에는 행선지, 시간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휠체어사용자와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3) 도로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또는 접근로는 휠체어사용자 2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합니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틈새는 휠체어바퀴나 목발 등이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였습니다.

보도의 기울기는 휠체어사용자등 교통약자가 보행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적절합니다.

보도에 가로등, 간판, 전주 등을 설치한 경우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였습니다.

보도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은 바닥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을 보도와 다르게 하였습니다.

횡단보도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턱낮추기 구간)은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혼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차이를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의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가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지하도 또는 육교에 계단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안내를 하고 있으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보도에 가로등, 간판, 전주 등을 설치한 경우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였습니다.			
차도의 편도 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교통섬)를 설치하였습니다.			

#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 1. 개념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전자정보는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비전자정보는 영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편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주최(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방송법에 따라 송출되는 방송을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말합니다. 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법인, 방송사업자 등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구분	단계적 적용 (자연인은 적용 제외)					
	2009.4.11	2010.4.11	2011.4.11	2012.4.11	2013.4.11	2015.4.11
사용자·노동조합 관계자	국가·지자체 300인 이상 사업장		100-299인 사업장		30-99인 사업장	
교육기관·책임자 교육 관련법인	장애아전담 보육원 국공립 특수학교 특수반이 있는 유·초중고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재학교·교육원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시설물 관련 행위자	전면적용					
이동·교통수단 관련 행위자	전면적용					
문화예술사업자	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 문화재단·기관 국공립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미술관		민간일반공연장, 영화상영관(300 석 이상), 문화의 집·청소년활동 시설 등, 사립 박물관·미술관
기타 문화예술사업자	전면적용					



구분	단계적 적용 (자연인은 적용 제외)					
	2009.4.11	2010.4.11	2011.4.11	2012.4.11	2013.4.11	2015.4.11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5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30~50만명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30만명 미만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
기타 체육(행사,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등) 관련 행위자					전면 적용	
공공기관	전면 적용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전면 적용					
의료인 등					전면 적용	
의료기관 등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그 외 의료기관	
그밖의 법인					전면 적용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정당한 편의의 대상		정당한 편의의 내용	비 고
공공기관 및 법인이 생산·배포하는 정보의 접근·이용	전자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법 제21조 제1항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비전자 정보	수화통역사(음성통역이 가능한 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전용 PC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CD 포함), 표준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로 저장된 파일), 개인형 보청기기(FM방식의 보청기기와 달리 일대일 대화용으로 사용하는 보청기), 자막(속기 포함), 수화통역(음성통역 포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2차원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 장애인용복사기(시각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법 제21조 제1항 영 제14조 제2항 제2호 영 제14조 제3항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해당 행위자에게 요청할 경우 해당 행위자는 요청받은 정당한 편의를 7일 이내에 장애인에게 제공)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의 참여 및 의사소통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법 제21조 제2항 영 제14조 제4항 (행사 개최 7일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제공)
방송법에 따라 송출되는 방송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법 제21조 제3항

#### 4. 체크시 유의 사항

- ❑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공공기관 및 법인(자연인은 제외)에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필요한 편의로서, 비록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보유하는 전자·비전자 정보라 할지라도 외부에 공개되거나 배포되지 않는 기관 내부 자료는 정당한 편의의 제공대상이 아닙니다.
- ❑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이 인식가능한 형태로 변환된 대체 정보(점자, 큰문자, 자막 등)의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의사소통 수단(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상전화기 등)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 ❑ 고용영역에서의 근로활동, 교육영역에서의 교육활동, 행정·사법절차의 참여, 참정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은 해당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는 그 밖의 영역에 관련된 사항 위주로 점검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가. 전자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홈페이지 내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각자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자막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OT -10,003)이 2005년 12월 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 나. 비전자 정보 관련 정당한 편의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큰 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녹음테이프, 수화통역, 자막 등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비전자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 보청기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인적, 물적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 다.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의 참여와 관련된 편의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7일 이전에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경우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음성통역 가능자)나 문자통역사를 배치하고, 보청기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	--	--	--

### 라.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

방영되는 방송물에 수화통역이나 자막(편집자막 포함),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사법 · 행정절차

## 1. 개념

사법 · 행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 등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를 말하며, 대상기관은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법 제26조 제4항)
-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법 제26조 제5항)
- 장애인이 인신구급 · 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 제공. (법 제26조 제7항)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시행령 제17조 제1항)

#### 4. 체크시 유의사항

- ▶ 법 제26조 제4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는 정당한 편의이므로, 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의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할 단계적 범위(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1) 공공기관 일반

#### 가. 이동 및 접근 편의

	예	아니오	해당없음
주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이 충분히 넓고, 턱이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련 부서가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나. 서비스 지원

시각장애인이 행정절차 참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는 점자자료, 텍스트파일, 2차원바코드 등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청각장애인이 행정절차 참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면 수화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의 행정절차 참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면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사법절차

	예	아니오	해당없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합니다.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장애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참정권

## 1. 개념

참정권에서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법 제27조 제2항)
-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법 제27조 제2항)
-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법 제27조 제2항)

## 4. 체크리스트

### 가. 투표소의 접근 편의

	예	아니오	해당없음
투표소를 1층에 위치한 장소로 선정하고 투표소 입구에 높이차가 있거나 계단이 있는 경우 임시경사로를 설치합니다.			
불가피하게 2층 이상의 장소에 투표소를 선정할 경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합니다.			
투표소 내에는 장애인의 편의와 투표를 보조할 보조인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장내 투표실이나 중간통로의 문이 휠체어 등을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합니다.			

### 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시 점자공보를 함께 제작하며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선거 관련 방송에 수화통역, 자막 등을 제공합니다.			

### 다. 투표에 필요한 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보육서비스

## 1. 개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란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말하며,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대상기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

## 3.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방식의 지원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영 제19조 제1호)
-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영 제19조 제2호)
-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영 제19조 제3호)
-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제공 (영 제19조 제5호)

#### 4. 체크시 유의사항

- 직장보육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과, 사용자가 위탁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는 위탁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있으며, 위탁보육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정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자는 위탁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5. 체크리스트

##### 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여성 근로자가 앉아서 수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침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지체·뇌병변장애 등 장애여성 근로자의 수유에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장애여성 근로자의 프라이머시가 지켜질 수 있는 별도의 수유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 지원

시각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여성, 뇌병변장애여성, 시각장애여성, 지적장애여성 등 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에게 접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 우선입소 지원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장애여성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 라. 직장보육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한 위험 제거

직장보육시설 밖에서 현관에 이르는 진입로에 시각장애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밖에서 현관에 이르는 진입로는 높이차가 제거되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내 행정실, 수유실, 놀이방 등의 출입구는 휠체어 사용자가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이 없고 충분한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장애여성이 이동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놀이 있는 아이들과 시각장애여성이 부딪혀 서로 다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장애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여성 근로자를 위한 확대문자, 점자 및 음성으로 된 보육시설 정보에 대한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바. 상담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

장애여성 근로자에게 장애 유형 및 특징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상담 담당자와 상담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것과, 직장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변동이 계획된 경우 장애여성 근로자와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접수



조사



위원회  
결정

권고

불이행



피해자의 신청

이행

구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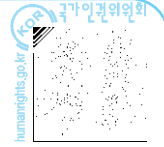
차별행위중지 · 원상회복 · 재발방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방법

전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전송 02) 2125-9811, 02) 2125-98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mailto: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
- 반복적 차별행위
-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MEMO



MEMO

MEMO



MEMO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

발행일 : 2009년

발행인 : 국가인권위원회

기 획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제 작 : 젊은기획 02) 2264-2015



국가인권위원회

(우)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을지로 1가 16)

대표전화\_ 1331 / 팩스\_ 02) 2125-9812

이메일\_ [webmaster@humanrights.go.kr](mailto:webmaster@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174-01